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2

발의연월일: 2020. 7. 28.

발 의 자: 강선우·전혜숙·허 영

이용우・홍성국・황운하

이수진비 · 김경만 · 윤미향

오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에게 식중독이 발병했으며 이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양성 판정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해당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여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없는 상황임. 또한,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인 피해 아동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손상된 신장을 회복하기 위해 투석을 받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유치원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비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나목 및 제101조제1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제10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	12
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	
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u>.</u>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나. 학교</u>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u><신 설></u>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u>한다.</u>
	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0조제1항 및 제3	1

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 9. (생 략)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④ (생 략)

<u>포함한다)</u>	
1의2. ~ 9.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